

'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5년 8월 8일

나. 회부일자 : 1995년 8월 8일

3. 제안이유

- '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제109회 도의회 정기회의 의결('94. 12. 30.)을 얻어 확정된 바 있으나,
- 주요사업의 추가시행 등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재산의 취득

- 시설채소시험장 조성

· 부지매입

-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6-1번지의외 12필지(답) 30,147m²

· 연구동 신축

1,147.35m²

· 관리자 신축

350m²

○ 임야매입

· 매입대상지 선정중

200,000㎡

5. 검토의견

'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,

이는 주요사업 추가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공유재산계획의 변경을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것으로 취득재산에 있어

○ 시설채소시험장 조성은

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지역별 대응능력 향상과 특화작물 개발이 절실하여 지역특산물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품질개선 및 포장법개발과 중부내륙지방에 적합한 시설형 개발을 위해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6-1번지 일원에 사업비 1,730백만원을 투자 부지30,147㎡을 매입하여 건물 1,497㎡(연구동 1동 1,147㎡, 관리사 1동 350㎡)규모의 시험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며

○ 임야매입에 있어서는

도유림과 연결 또는 인접된 사유임야 200,000㎡에 대해 사업비 120백만원을 투자매입하여 도유임야 집단화로 관리기능의 강화와 산림경영의 기반구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
이의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변경계획안으로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첨 부

'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